

담당	책임자	AM	부점장

수출거래추가약정서

【D/A포페이팅(Forfaiting) 거래】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년 월 일

본인 _____ (인)

주소 _____

본인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제1조에서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과 “외국환거래약정서”가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합니다.

제1조(적용 범위)

이 약정서는 수출상이 수입상과 D/A수출계약을 작성한 수출거래로 수출환어음의 만기일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등 기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다음 각호의 수출대금 채권을 매입하는 거래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이하 “D/A포페이팅 거래”라 한다)에 대해 적용합니다.

-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용역 포함)을 수출하는 거래 (일반수출)
-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위탁가공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중계무역)

제2 조(진술 및 보장)

본인은 은행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 본인이 제출한 D/A수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 본인이 제출한 수출환어음 및 모든 선적서류는 진정하고 완전하며 D/A수출계약서 조건과 일치합니다.
-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행한 수출환어음의 인수는 진정하고 유효합니다.
- 본인은 수출환어음 및 D/A수출계약서 상의 권리를 양도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요건(배서를 포함한다) 및 절차를 완료합니다. 은행이 수출환어음 및 부대서류의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국내외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없습니다.
- 본인은 당해 D/A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중복하여 자금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 본인이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이후에는 은행은 결제기한 연장이나, 당해D/A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하여 수입상과 어떠한 조건변경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 최근 수입상의 신용상태악화 등 D/A포페이팅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 수입상의 신용상태악화 등 D/A포페이팅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본인이 은행에 알리고 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D/A포페이팅 거래를 하기로 별도의 서면 동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본인은 수입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은행이 수입상에 대한 신용평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하고 제출서류에 대한 진정함을 확인합니다.



제3조(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본인은 수출환어음이 해외 추심은행(수입상 거래은행)을 통하여 인수된 이후에는 비소구조건으로 전환되어 수출환어음의 만기일에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제4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출대금의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제4조(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

- ① 은행은 해외 추심은행(수입상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이 수출환어음 인수를 확정하기 이전에는 본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출환어음의 인수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은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1. 제1조의 적용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거래인 경우
 - 2. 제 2조에 따른 진술이 허위이거나 보장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3. 본인의 귀책(선적서류의 위조, 물품의 하자·불량, 수입상과의 계약불이행 등)사항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 4. 수입국 법원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 5. 수입상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거나 항변 또는 상계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6. 외국(수입상의 소재국 또는 수입대금 지급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수입국의 제한, 금지 또는 환거래의 금지, 불능의 경우
 - 7. 본인이 해외수입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은행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제5조(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등)

입금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은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장 공통사항 및 제2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6조(차액 정리)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해외은행(은행의 해외지점 포함)의 수수료가 공제됨에 따라 수출대금과 매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은 그 차액에 대해 은행의 청구에 따라 즉시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7조(효력)

이 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우선합니다.

제8조(기타 특약사항)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본 인

(인)

본인의 자서확인	소 속		직 위		성명	(인)
----------	-----	--	-----	--	----	-----

